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

뉴욕시 이민자를 위한 자료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민 법률 지원

안전한 무료 이민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800-354-0365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NYC 신분증

IDNYC를 신청하세요. 10세 이상의 모든 뉴욕시 거주자를 위한 무료 신분증입니다.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idnyc를 방문하여 갱신 및 신규 등록을 위한 예약을 신청하세요.



영어 클래스

언제 어디서든 무료 영어를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wespeaknyc.cityofnewyork.us를 방문하세요.



의료 서비스

NYC Health + Hospitals(H + H)는 응급 치료, 기본 의료 서비스, 건강 검진, 예방주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44-NYC-4NYC(1-844-692-4692)번으로 전화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으세요. NYC Care 프로그램을 포함한 건강 보험에 등록하려면 646-NYC-CARE (646-692-2273)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icare.nyc를 방문하세요.



정신 건강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에 대한 비밀 보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888-692-9355 또는 988번으로 전화하거나 65173으로 "WELL"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또한 nyc.gov/mentalhealthaccess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다국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nyc.gov/mentalhealthservices에서 988 온라인 목록을 통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응급 상황 발생 시 911번으로 전화하세요. 응급 상황은 경찰, 소방서 또는 앰블런스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뉴욕 경찰국은 범죄 피해, 증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

4-21세의 모든 뉴욕시 아동 및 청소년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schools.nyc.gov/fwc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일반적인 뉴욕시 관련 자료 및 정보

뉴욕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문제를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portal.311.nyc.gov를 방문하세요.



NYC 이민자 서비스국 핫라인

212-788-7654번으로 전화하거나(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askmoia@cityhall.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 사기 방지

이민에 관련된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은 정식 변호사 또는 법무부 공인 대리인과만 상담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nyc.gov/immigrationfraud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민 집행에 대한 권리

뉴욕시는 이민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방 이민 집행관이 접근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nyc.gov/knowyourrights를 방문하거나 무료 이민 법률 핫라인 800-354-0365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들은 뉴욕시법에 따라 유급 병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등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nyc.gov/workers 방문, 또는 212-436-0380번으로 전화하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차별 신고

괴롭힘과 차별은 뉴욕시 인권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차별 사건을 신고하려면 212-416-0197번으로 전화 또는 nyc.gov/reportdiscrimination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뉴욕시가 도와드립니다. nyc.gov/nychope를 방문하거나 가정 폭력 핫라인 800-621-HOPE를 이용하세요.

임차인의 권리

퇴거 또는 임대인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yc.gov/tenantprotection을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tenant helpline”(임차인 전화 서비스)이라고 말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 대한 권리

노숙 상태인 경우 보호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정된 노숙자 서비스부(DHS) 접수 센터를 방문하여 보호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1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소비자 보호

사업자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nyc.gov/consumers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 시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